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5.] [해양수산부령 제475호, 2021. 3.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 [전체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품질표시 대상인 소금의 포장·용기 등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수입시기를 수입 연월 또는 수입 연월일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산 소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표시기준을 정하고, 품질검사에 합격한 소금의 검사확인 표시를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를 사용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 [전체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475호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21조제7항 및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출입·조사·점검·검사·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생산 연월"을 "생산 연월 또는 생산 연월일"로, "수입 연월일"을 "수입 연월 또는 수입 연월일"로 한다.

별표 3 제3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결정체소금

항목	천일염	재제조 소금	태움· 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 소금	가공 소금	검사방법
염화 나트륨 (%)	70.0 이상	88.0 이상	88.0 이상	95.0 이상 (해양심층수염은 70.0 이상)	88.0 이상	35.0 이상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과 규격에 따름
수분 (%)	15.0 이하	9.0 이하	4.0 이하	4.0 이하 (해양심층수염은 10.0 이하)	9.0 이하	5.5 이하	
불용분 (%)	0.15 이하	0.02 이하	3.0 이하	0.02 이하	0.15 이하	-	
황산이온 (%)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0.4 이하 (해양심층수염은 5.0이하)	5.0 이하	5.0 이하	
비소 (mg/kg)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납 (mg/kg)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카드뮴 (mg/kg)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수은 (mg/kg)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페로시아화 이온 (g/kg)	불검출	0.010 이하	0.010 이 하	0.010 이하	0.010 이하	0.010 이하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확인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확인 표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확인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4]

검사확인 표시(제17조제5항제1호 본문 관련)

1. 기본도안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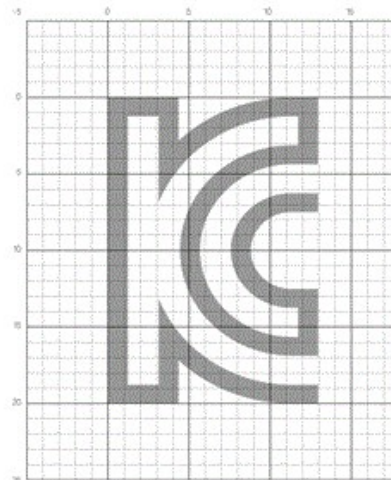
소금검사확인



품질검사기관명

2. 도안 요령

가. 마크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






나. 마크 및 글자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 마크 및 글자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을 사용한다.



라. 포장재의 색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 은색(KS A 0062에 따른 N 7 색채) 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사용할 수 있다.

	금색 10YR 6/4
	은색 N 7
	검정색 N 2

3. 표시방법

- 가. 도안은 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에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바꿀 수 있다.
- 나. 도안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날인 또는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붙여서 표시해야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붙여서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마크 우측에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입니다."를 표시할 수 있다.

소금검사확인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입니다.

품질검사기관명